

NAJU
*Web
Contents*

2021년 09월 28일 10시 58분

목차

목차	2
영양플러스 사업	3
사업 목적	3
대상자 선정 기준	3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2019년 기준)	3
제출서류	4
자격조건	4
대상자 졸업 및 대상자격 취소	4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4
대상 자격 취소	4



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 도모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대기기간 : 최대 1년)

- 1 나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출산 후 6개월),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만6세(60개월)미만 영유아
- 2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가구는 대상자격을 얻을 수 없음
- 3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2019년 기준)

가구원 수 (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325,000	75,506	40,677	76,457
3인	3,008,000	97,689	82,348	98,862
4인	3,691,000	120,060	113,534	121,528
5인	4,374,000	142,729	142,335	144,749
6인	5,056,000	163,833	168,085	166,543
7인	5,739,000	186,282	195,048	189,330
8인	6,422,000	209,942	224,509	213,859
9인	7,105,000	231,041	251,313	236,255
10인	7,788,000	255,816	279,085	263,711

-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으로 관리 시스템 입력

구분	자격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만6세 미만(60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 후 6주 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포함)
 -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서류준비
 - 직업이 군인인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확인서 (발급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주소가 따로 되어있는 경우,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가구 등에 한함)

○ 자격조건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생활 및 영양관리 방법 상담, 보충식품 활용조리 및 식품보관법 등(월1회)
-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등 영양위험요인 평가
- 보충식품 지원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의 식품패키지 중 제공(월 2회)

▸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분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영아(6-12개월) : 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유아(1-5세)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 임신, 혼합수유, 출산부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 완전모유수유부(출산후12개월)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오렌지쥬스, 닭가슴살통조림

▸ 보충식품비 무료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

▸ 보충식품비 10%자부담 적용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

○ 대상자 졸업 및 대상자격 취소

▸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대상 자격 취소

- 사업 참여 중단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영양교육 불참하거나 사전 연락없이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http://www.naju.go.kr>)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에 대해서 자(타)의로 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한 경우
-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NAJU

Web Contents

